

● 제318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**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토보고서
(의안번호 : 589)**

2023. 4. 24.

**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**

【박성연 의원 대표발의】

의안번호 589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안자 : 박성연 의원 외 24인
- 나. 제안일자 : 2023년 03월 28일
- 다. 회부일자 : 2023년 04월 03일

2.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감사 대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(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.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지향)

1 개정안의 취지

- 개정안은 서울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51조제2항¹⁾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수수료 지급 등의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음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개정안의 제안배경

-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, 정부는 이러한 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수확대 및 효율적 정부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 사회복지기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민간분야 후원금을 재원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, 특히 정부 등의 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.²⁾
-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출과 민간기부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 또한 커지고 있으며,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무보고 및 운영에 관한 투명성, 효율성 및 비교가능성을 보장하고 제고시킬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.³⁾

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51조(지도·감독 등)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,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) 고영일 외(2018)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의 투명화·효율화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재무·회계기준마련, 보건복지부

- 이와 관련해 「18년 12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.
- 「18년 12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 소관 업무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는 것과 함께,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도 감독 수단으로 규정되었음.

나. 사회복지법인 회계감사관련 상위법 규정 현황

- 보건복지부에서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3조제4항⁴⁾, 제34조제4항⁵⁾, 제45조제2항⁶⁾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『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』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
3) 고영일 외(2018)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의 투명화·효율화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재무·회계기준 마련, 보건복지부

4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3조(재산 등)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.
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,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(價額)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.
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1. 매도·증여·교환·임대·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
 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(長期借入)하려는 경우
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5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 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 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6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5조(후원금의 관리)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(이하 “후원금”이라 한다)의 수입·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하여야 한다.
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,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,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동 규칙에서는 회계감사에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.

『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』 제42조의 2(회계감사)

- ①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
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
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
 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 5. 제42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등 회계감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다.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추진현황

-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 ·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도 · 감독되고 있음.
 - 서울시에서는 동 조례에 따라 반기별 1회 서울시보 고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명단을 고시하고 있으며, 2023년 상반기 기준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은 총 101개소로 복지정책실 소관 71개소, 시민건강국 소관 2개소,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8개소임.

- 현재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⁷⁾ 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을 지도·감독하고 있으며, 이와는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중 위탁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음.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제7항⁸⁾ 및 제8항⁹⁾에서는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매년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.
 - 특히 2017년도 1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개정을 통해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의무화한 바 있음.
- 서울특별시 조직기획관에서 발간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,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수탁기관은 직접 회계법인(공인회계사)을 지정할 수 없고, 사업 주관부서에서 공인회계사회의 추천 등을 통해 감사인을

7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지도·감독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, 수탁자는 지도·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8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(사업비 정산기준 마련, 정산 매뉴얼 작성,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)은 규칙으로 정한다.

9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

선정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.

- 이에 따라 서울시의 모든 민간위탁 사무는 조직담당관 주관으로 통합회계감사를 받게 되며, 조직담당관이 통합발주 하여 일괄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2023년 기준, 조직담당관에서는 362개 위탁사무에 대해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9억 8천5백만원임.

3 종합의견

-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시설과 이를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투입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회계 투명성도 강조되고 있음.
-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의 지도·감독의 기능을 강화하고,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회계감사실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것으로,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- 다만, 이미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해 일괄적으로 회계감사를 추진하고 있어 해당 조례 및 현재 시행 중인 지침과 중복·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, 이러한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음.

문 의 처

도미화 입법조사관 (02-2180-8147)

참고 1. 고시 대상 시립 사회복지시설 현황 [2023. 2. 기준]

(2023. 2. 21. 기준)

실국	부서	시설수	시설종류	시설수
총 101개소 (3개 실국 / 10개 부서 / 31종류)				
복지정책실 (71개소)	안심돌봄복지과	1	종합사회복지관	1
	어르신복지과	35	노인보호전문기관	4
			노인종합복지관	19
			양로원	2
			노인전문요양원, 실버케어센터 등	10
	장애인복지정책과	6	중증 여성장애인 일시보호	2
			중증장애인 보호	1
			학대피해장애인동쉼터	1
			피해장애인 일시보호	1
			피해장애인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	1
	장애인자립지원과	17	장애인 직업재활지원	6
			장애인복지관	9
			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	1
			장애인체육센터	1
	자활지원과	12	노숙인 요양시설	1
			노숙인 자활시설	2
			노숙인 재활시설	1
			노숙인 종합지원센터	3
			쪽방상담소	5
시민건강국 (2개소)	정신건강과	2	정신요양시설	2
여성가족정책실 (28개소)	양성평등담당관	4	여성노숙인 시설	2
			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	1
			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	1
	가족다문화담당관	3	서울시가족센터	1
			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	1
			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	1
	아동담당관	15	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시설	5
			학대피해아동쉼터	3
			아동보호전문기관	7
	아이돌봄담당관	6	서울형 키즈카페	1
			우리동네키움센터	5